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317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3. 3. 17.

판결 선고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① 망 D(1920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E(1931년생)과 혼인하여 F(1950년생), 피고(1959년생), G(1962년생), H(1965년생)를 자녀로 두었고, B(1965년생)과 사이에 원고(2001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② 망 E은 2016. 5. 7.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6. 10. 27. 사망하였고, 자녀인 F, 피고, G, H,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오피스텔의 증여 등

① 망인은 2013. 1. 18. 원고에게 망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3. 2. 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2. 29.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2017. 1. 9. K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한편 망인은 2013. 2. 25. L조합에서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L조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사건 L조합 계좌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료 합계 33,170,000원이 입금되었다.1)

다.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의 인출 등

① 망인은 2016. 2. 18. M은행에서 N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40,000,000원을 예탁하였으며, ○ 예금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10,000,000원을 예탁하였으며, P 주거예금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30,000,000원을 예탁하였다(이하 위 3개의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라 한다).

②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L조합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8,442,000원을 이체하였다.

③ 피고는 2016. 10. 11. M은행 Q 출장소에 내점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 중 P 주거예금 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예탁금 30,000,000원 중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남은 19,082,066원을 이 사건 L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L조합 계좌에서 2016. 10. 26. 6,000,000원, 2016. 10. 27. 4,000,000원, 2016. 10. 30. 5,000,000원, 2016. 10. 31.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경과 등

① F, 피고, G, H는 2017. 2. 3. B,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1234호).

②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1. 다음과 같이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나52709호), 그 후 B과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0다299115호)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F, C, G, H에게,

1) B은 각 44,711,278원 및 위 각 돈 중 43,048,48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1,662,798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0.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A은 각 18,427,714원 및 위 각 돈 중 10,932,765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7,494,949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F, C, G, H의 B,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③ 위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판단한 내용 중 이 사건 L조합 계좌 및 M은행 3개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원고들은 'F, C, G, H'를 가리키고, 피고들은 'B, A'을 가리킨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관한 판단

나. 적극적 상속재산

2) 예금채권

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로부터 망인 명의 M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통장에 존재하던 80,000,000원의 예금채권 중 10,000,000원을 망인의 R에 대한 간병비 채무 변제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위 예금채권 중 20,000,000원을 망인의 S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합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565,048,000원(= 483,048,000원 + 70,000,000원 + 12,000,000원)이 된다.

다. 증여재산액

4)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액

피고들은 망인이 2016. 9. 22. 원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8,442,000원 등 원고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들은 위 8,442,000원을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이체된 시기는 망인이 사망 하기 전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산입 주장으로 선행한다).

제1심법원의 L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 명의 계좌(L 조합(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6. 9. 22. 원고 C 명의 계좌로 8,442,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으로부터 8,442,000원이 이체된 원고 C의 계좌는 이체 당일 개설되었다가 위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계좌를 해지한 점, 망인의 8,442,000원 외에는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망인으로부터 2016. 9. 22. 입금된 8,442,000원의 대부분이 망인의 재산세, 주민세,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C에게 8,442,000원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다.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2)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 7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손상속액은 각 14,000,000원(= 70,000,000원 ×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버지인 망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이 사건 L조합 계좌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료를 입금받아 적금을 들어 관리해주면서 원고가 성인이 되면 위 돈을 주기로 하였다. 망인이 관리하던 원고의 2013. 1. 18.부터 2016. 10. 25.까지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료 수입은 34,045,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인지능력이 없어지자 요양보호사로부터 이 사건 L조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8,442,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원고의 어머니 B이 관리하던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의 통장을 확보한 후, 2016. 10. 11. 예탁금 30,000,000원인 계좌를 해지하고 위 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는 90,000,000원에 이르는 예금을 편취하였는데, 그중 34,045,000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4,045,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한편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판결은 망인의 예금채권에서 원고 소유의 월임대료 수입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나누었어야 함에도, 원고 소유의 월임대료 수입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피고가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증여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와 임대료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입을 원고를 위하여 관리하였던 것이 아니다.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입이 34,045,000원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의 예탁금 80,000,000원은 망인이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T오피스텔 U호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가입한 것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입을 모아서 가입한 것이

아니다.

선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8,442,000원은 망인의 재산세, 주민세,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의 통장은 B이 아니라 망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30,000,000원짜리 적금을 해지하여 밀린 간병비와 S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라'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1. 예탁금 30,000,000원인 계좌를 해지하고, 10,000,000원은 밀린 간병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망인의 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던 것이다.

선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위 20,0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의 예탁금 중 70,000,000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되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로 합계 33,17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13. 1. 18. B에게 경주시 V 답 991m², W 답 1769m²를 증여하고 2013. 2. 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B을 대리하여 2014. 11. 21.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② B은 선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2018. 4. 19.자 준비서면(을 제9호증)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망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당신께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용처에 사용하셨습니다.", "망인 자신의 은행대출금(마이너스 통장)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셔서 피고가 증여받은 경북 경주시 X 토지를 담보하여 105,000,000원을 대출하여 2016. 12. 29. 망인 계좌로 입금해드리는 등,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관리하셨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해놓고, 자신이 돈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L조합 계좌에서 2016. 9.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8,442,000원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은 위 돈의 대부분이 망인의 재산세, 주민세,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8,442,000원을 피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에 입금된 80,000,000원 중 10,000,000원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은 위 돈이 망인의 R에 대한 간병비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에 입금된 80,000,000원 중 해지되지 않은 2개 계좌의 예탁금 합계 50,000,000원은, 피고가 그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해당 예금채권 전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M은행 3개 계좌에 입금된 80,000,000원의 출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료라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율

별지

1) 원고는 2013. 1. 18.부터 2016. 10. 25.까지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대료 수입이 34,04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33,17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